

#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419 호 2023. 9. 14.(목)

## 규 칙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34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1

##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83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84호[하천점용 허가(협약) 고시]..... 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86호[달천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6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87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19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89호[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20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90호[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31, 소로1-3호선)사업]..... 2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91호[하천점용 허가(협약) 고시]..... 2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92호[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25

##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219호[2023년 어린이, 임신부 및 어르신 지자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계획 공고]..... 2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230호[울산 북구 인애어린이집 증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3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233호[- 현대자동차(주) 전기차 공장 신축공사 - 공장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62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234호[「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주전~어물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를 위한 열람공고]..... 9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235호[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10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239호[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103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복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구 홈페이지(<a href="http://www.bukgu.ulsan.kr">www.bukgu.ulsan.kr</a>) → 구정소식 → 공고 → 복구공보</li> </ul> </li> </ul>
--------	---

회 람									
--------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복구 편집 : 미디어정보과(☎241-7125, 행정7125)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김경희

2023년 9월 2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3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만 7세”를 “7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비상근무 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u>만 7세</u> 미만의 미취학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 중 1명</p>	<p>제22조(비상근무 제외자) -----</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7세</u></p> <p>-----</p> <p>-----</p>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행정기본법」 개정(23.06.28.시행)에 따라 만 나이 정착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내 나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 삭제(안 제22조제3호)
  -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이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어 정비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183호

##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1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재단법인 울산문화관광재단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울산역로 255(교동리) UECO(울산전시컨벤션센터)		
점용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745-118번지	하천의 명칭	○ 매곡천
점용 내용	○ 2023년 울산거리공연 지원사업 추진 (버스킹 진행)	점용 면적	○ 33.0㎡
점용 기간	1차 : 2023. 9. 23. (토) 12:30 ~ 17:40 2차 : 2023. 10. 28. (토) 12:30 ~ 17:30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184호

## 하천점용 허가(협의)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1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사업단장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17길 24-6		
점용 위치	울산광역시 복구 효문동 820-9번지	하천의 명칭	명촌천
점용 내용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효문공단) 사업구역 외 도로개설	점용 면적	51.9㎡
점용 기간	2023. 9. 11. ~ 2024.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186호

## 달천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6조에 따라 달천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사항을 같은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4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I. 농공단지 일반현황

- 관리기관 : 울산 달천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관리권자 및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구성목적
  - 농촌의 농외소득 증대 및 농민에 대한 고용기회 부여
  - 관내 중소기업의 부지난 해소로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의 집단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 구성근거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 위 치 : 울산광역시 복구 달천동 300번지 일원
- 면 적 : 259,634.3m<sup>2</sup>

## 6. 추진경위

- 1997. 3. 11. : 달천농공단지 지정 승인(경상남도)
- 1997. 7. 11. : 실시계획 승인(울산시)
- 1999. 1. 7. : 실시계획 변경승인(북구)
- 1999. 8. 12. : 실시계획 변경승인(북구)
- 1999. 9. 17. : 준공인가(북구)
- 1999. 9. 22. : 관리기본계획 승인(울산광역시 고시 제1999-128호)
- 2002. 2. 14. :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울산광역시 고시 제2002-20호)
- 2004. 12. 6. : 실시계획 변경승인(북구 고시 제2004-49호)
- 2010. 4. 8.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북구 고시 제2010-28호)
- 2012. 3. 19. : 실시계획 변경승인(북구 고시 제2012-34호)
- 2016. 7. 14. : 농공단지계획 변경승인(북구 고시 제2016-116호)
- 2018. 6. 7. :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울산광역시 고시 제2018-126호)
- 2019. 8. 22. : 농공단지계획 변경승인(북구 고시 제2019-188호)
- 2023. 9. 7. : 농공단지계획 변경승인(북구 고시 제2023-177호)

## 7. 분양현황

산 업 단지명	총면적 (㎡)	분양가능면적(㎡)				분양	조성 기간	조성기관
		계	미분양					
			조성	미조성	소계			
달 천 농공단지	259,634.3	194,108.2	-	-	-	194,108.2	'97.7.11.~ '99.9.17.	울산공동화 사업협동조합

## 8. 입주현황(변경)

구분	입주업체수			면적(㎡)			비고
	계	제조업	지원기관	계	제조업	지원기관	
기정	86	83	3	201,906.5	194,108.2	7,798.3	
변경	89	86	3	201,906.5	194,108.2	7,798.3	

※ 2023년 8월 기준 (달천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내부자료)

### 9. 입지여건

시 설 명	시설현황	확 충 계 획
도로	-진입도로 B=13.5m L=313.83m -간선도로 B=13.5m L=997.9m -지선도로 B=10.0m L=1,650.29m -지선도로 B=8.0m L=93.5m -지선도로 B=6.0m L=96m	※ 울산→경주간 7호 국도와 연결
용수(상수도)	-울산광역시 상수도 시설계획에 의하여 설치	
전력	-한국전력공사에서 시공	
통신	-한국통신공사에서 시공	
배수시설	-우수관로 L=5,230.5m 우수지선 L=1,847.5m B-플룸관 L=752m U-플룸관 L=2,631m -오수관로 L=2,704m	
가로등	-54기(나트룸등)	
공동이용시설	-연면적 831.84㎡(2층) 1동	

※ 오폐수처리장 폐지(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188호)

## II.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

### 1. 관리기본방향

- 농공단지 시설물 및 입주업체의 효율적 관리
- 공해없는 쾌적한 농공단지 조성
- 노사화합을 통한 산업평화 정착

## 2. 관리할 농공단지의 면적

구 분	면 적(m <sup>2</sup> )	증감	비고
계	259,634.3	100.0	
공 장 용 지	194,108.2	74.8	
도 로	34,238.7	13.2	
공동이용시설	7,798.3	3.0	
기 타	23,489.1	9.0	

## 3. 입주대상업종, 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변경)

## 가. 입주대상업종(변경)

## ○ 산업시설구역

- 저공해 제조업으로서 기계, 금속, 전자제조업종 등

## ○ 추가업종

- A : 지붕(옥상), 벽체에 설치하는 태양력 발전업(35114)

- B : 일반창고업(52101), 북구 달천동 203-1번지(A=5,739m<sup>2</sup>)에 한함

※ 업종별 배치계획도 : 붙임1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규정에 의한 입주할 수 없는 다음 사업장 제외

- 환경부장관이 별도 지정·고시하는 지역내의 연간 대기오염 물질발생량의 합계가 20톤 이상인 사업장

- 단,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

- 1일 폐수배출량이 2,000m<sup>3</sup>이상인 사업장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시행규칙」 제35조의 2 및 별표 13의2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수배출 관련 별표5의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

## ○ 지원시설구역

-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보험·의료사업 및 식당 등의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나. 입주자격

- 산업시설구역
  - 기계, 금속, 전자 등 저공해 제조업체
  - 환경성검토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중소제조업종
- 지원시설구역
  -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한 자
  - 금융·보험·식당 등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 다. 입주우선순위

- 건설하고 유망한 중소제조업
- 저공해 제조업
- 입주신청순서에 따라 분양

### 4. 생산·수출 및 고용전망

#### 가. 생산 및 수출전망

입주업체수	년간생산량	비고
83개	1,460억원	업체당 평균 연간 17.6억원 예상

※ 대다수 입주업체가 대기업 협력업체로서 자체수출전망은 미약하나 향후 간접수출 지원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됨.

#### 나. 고용전망

업체수	고용인원	비고
83개	1,700명	

## 5. 임금소득, 원자재 공급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전망

## 가. 임금소득 증대전망

업체수	고용인원	1인평균임금(년)	소득증대효과	비고
83개	1,700명	12백만원	204억원	

## 나. 원자재 공급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전망

- 농공단지조성 및 공장건축에 따른 건설경기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예상
- 입주기업체의 원자재 및 부자재수급에 따른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전망

## 6. 입주기업의 직종별 인력수요 및 지역별 인력수급 전망

## 가. 직종별 인력수요전망

업종별	인력수요(명)	비고
계	1,700	
금속기계 제조업	1,010	
비금속광물 제조업	270	
화학제품 제조업	120	
기타	300	

## 나. 지역별 인력수급 전망

지역	취업가능인원(추정)	실업률	고용가능인원(추정)	비고
북구	계 8,591명 농소1,2,3동 5,254명 송정동 1,140명 효문동 1,038명 기타지역 1,159명	2.1%	180명	사무직:25명 기능직:45명 단순노무:110명

※ 대부분 이전 업체로서 기존 인력을 재고용하고 향후 경기전망에 따라 신규 고용근로자가 필요시 인근 지역 고용가능 인력으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7. 인근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개별공장에 대한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에 관한 전망 및 협력 방안

가. 인근 농공단지

(단위:천㎡, 2017. 4/4분기 기준)

단지명	지정 면적	지정 일자	분양 면적	분양율	입 주 업체수	주요 업종	고용 현황
계	328.45		263.39		30		2,362
상북농공단지 (상북면)	132.23	86.12.8	106.67	100%	12	전기· 기계	783
두서농공단지 (두서면)	128.73	90.2.2	100.84	100%	14	기계· 금속	884
두동농공단지 (두동면)	67.49	93.12.16	55.88	100%	4	"	695

나.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면적단위 : 천㎡)

단지명	지정 일자	입주 기업체	고용 인원	조성(대상)면적			공장용지면적			공공 시설 및 지원 시설
				총면적	조성	미조성	총면적	조성	미분양	
울산 미포 산업 단지	'66.7.20.	514	87,876	46,135	34,567	5,773	30,296	30,296	4,248	

## 다. 농소지역 공장(제조업) 현황

구분 \ 업종별	계	금속기계	비금속광물	화학	목재· 제지 제품	기타
공장수 (개)	100	81	5	6	5	3
고용인원(명)	1,727	1,413	138	101	47	28

## 라.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에 관한 전망 및 협력방안

- 동종의 제조업이 밀집하여 상호정보교류 용이
- 대다수 인근업체가 대기업 협력업체로서 공동기술개발과 판로가 동일하므로 업체의 의지에 따라 지원협력 용이
-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로 입지여건 기반시설 확보
- 입주업체 생산품에 대한 대내외 홍보활동 적극 추진
  - 인터넷망(홈페이지 등) 활용 입주업체 정보망 구축

## 8. 농공단지의 용도별 구획 및 공장배치 계획

## 가. 용도별 구획계획

구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고
계	259,634.3	100.0	
산업시설	194,108.2	74.7	
지원시설	7,798.3	3.0	
공공시설	37,803.7	14.6	
녹지시설	19,924.1	7.7	

※ 용도별구역 평면도 : 붙임2

## 나. 공장 배치계획

## 업종별 공장배치계획(기정)

업종별	구분	업체수	면적(m <sup>2</sup> )	비고
계		88	194,108.2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38	77,926.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3	74,029.5	
가구 및 기타 제조업		8	17,936.4	
전기·가스 및 증기업		2	7,250.1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6	13,347.1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1	3,618.2	
추가 A : 지붕(옥상), 벽체에 설치하는 태양력 발전업(35114)		-	(194,108.2)	중복 허용

## 업종별 공장배치계획(변경)

업종별	구분	업체수	면적(m <sup>2</sup> )	비고
계		86	194,108.2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1	1,639.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5	10,780.1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5)		7	12,654.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30	61,892.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4	11,587.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31	71,693.6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제외(20)		1	7,241.3	
전기장비 제조업(28)		6	13,930.4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1	2,689.1	
추가 A : 지붕(옥상), 벽체에 설치하는 태양력 발전업(35114)		-	(194,108.2)	중복 허용
추가 B : 일반창고업(52101)		-	(5,739)	중복 허용

※ 2023년 8월 기준 (달천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내부자료)

## 9. 공동이용시설과 기타 지원시설의 설치운영계획

## 가. 지원시설 설치현황

사업명	시설명	기간	사업내용	비고
공동이용시설물	식당·슈퍼	'99. 5. 1 ~ '99. 9. 17	부지면적 : 1,574㎡ 건축연면적 : 831.84㎡	
청년창업시설	청년지원 제조공간	'20. 1. 1 ~ '20. 6. 30	부지면적 : 1,930㎡ 건축연면적 : 990㎡	
근로자 지원시설	달천조합식당	'00. 6. 1 ~ '00. 8. 8	부지면적 : 826.1㎡ 건축연면적 : 599.6㎡	

## 나. 운영계획

- 공공이용건축물 : 울산 달천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관리위탁
- 청년창업시설 : 전문기관 관리 위탁
- 근로자지원시설 : 울산공동화사업협동조합 관리운영
- 폐수종말처리장 폐쇄로 농공단지 내 협잡물제거 스크린, 저류조, 우·오수관로 관리 : 울산 달천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관리위탁

## 10. 입주기업체에 대한 시설·운전자금 및 기술지원

## 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 지원자금 종류 : 시설 및 운전자금
- 신청기간 : 매월 1일 ~ 10일
- 신청장소 : 울산광역시 기업육성과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부
  - 시설자금 : 7억이내,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연 5.5%)
  - 운전자금 : 3억이내,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연 5.5%)

## 나. 기술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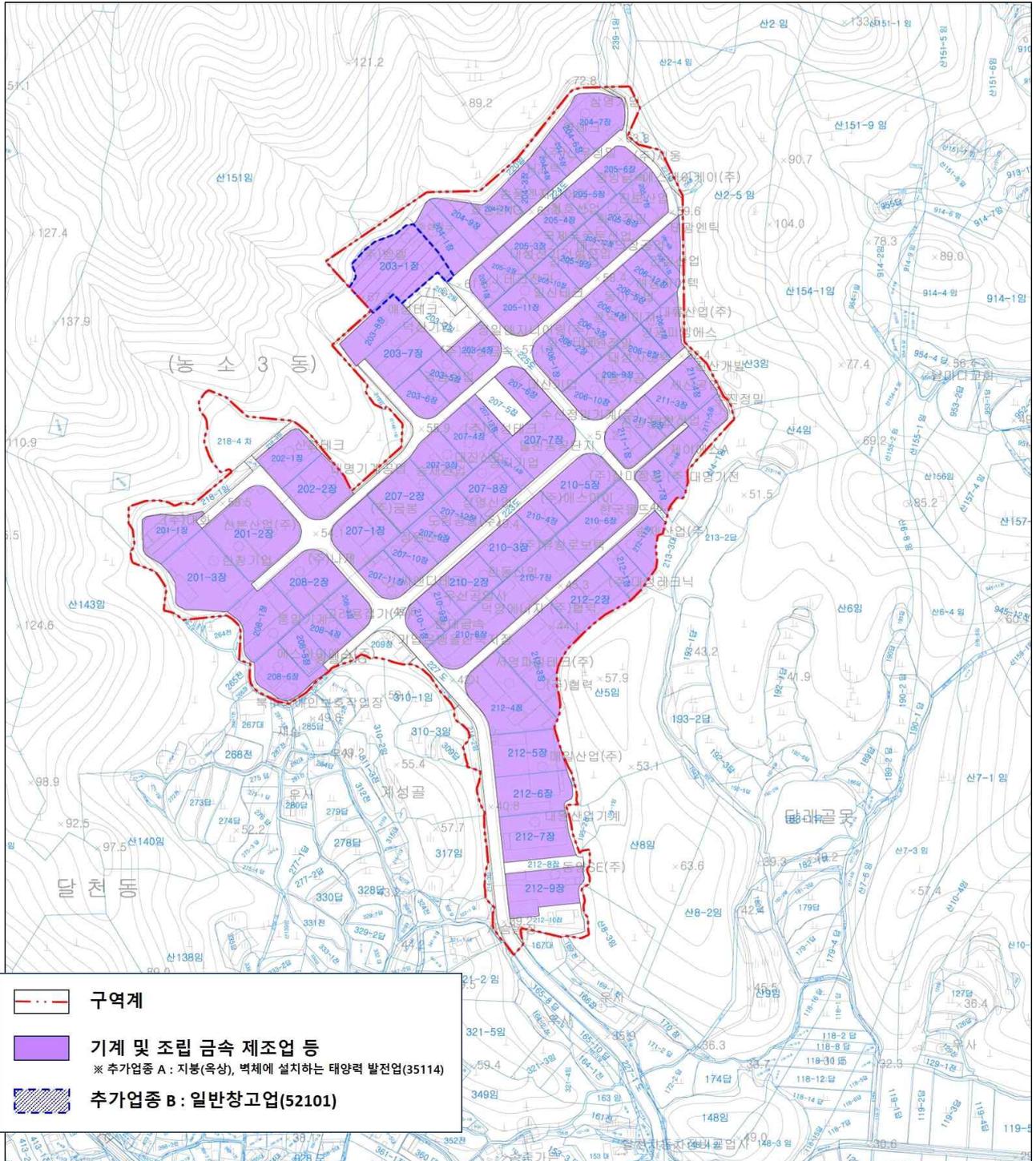
- 공장자동화를 위한 생산기술 연구지원
- 기술 및 정보이용 설명회 개최
- 생산성 향상 및 품질관리 활동강화
- 수출상품의 고품위화 및 고부가가치화
- 각종 산업기술 정보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 11. 입주업체 사후관리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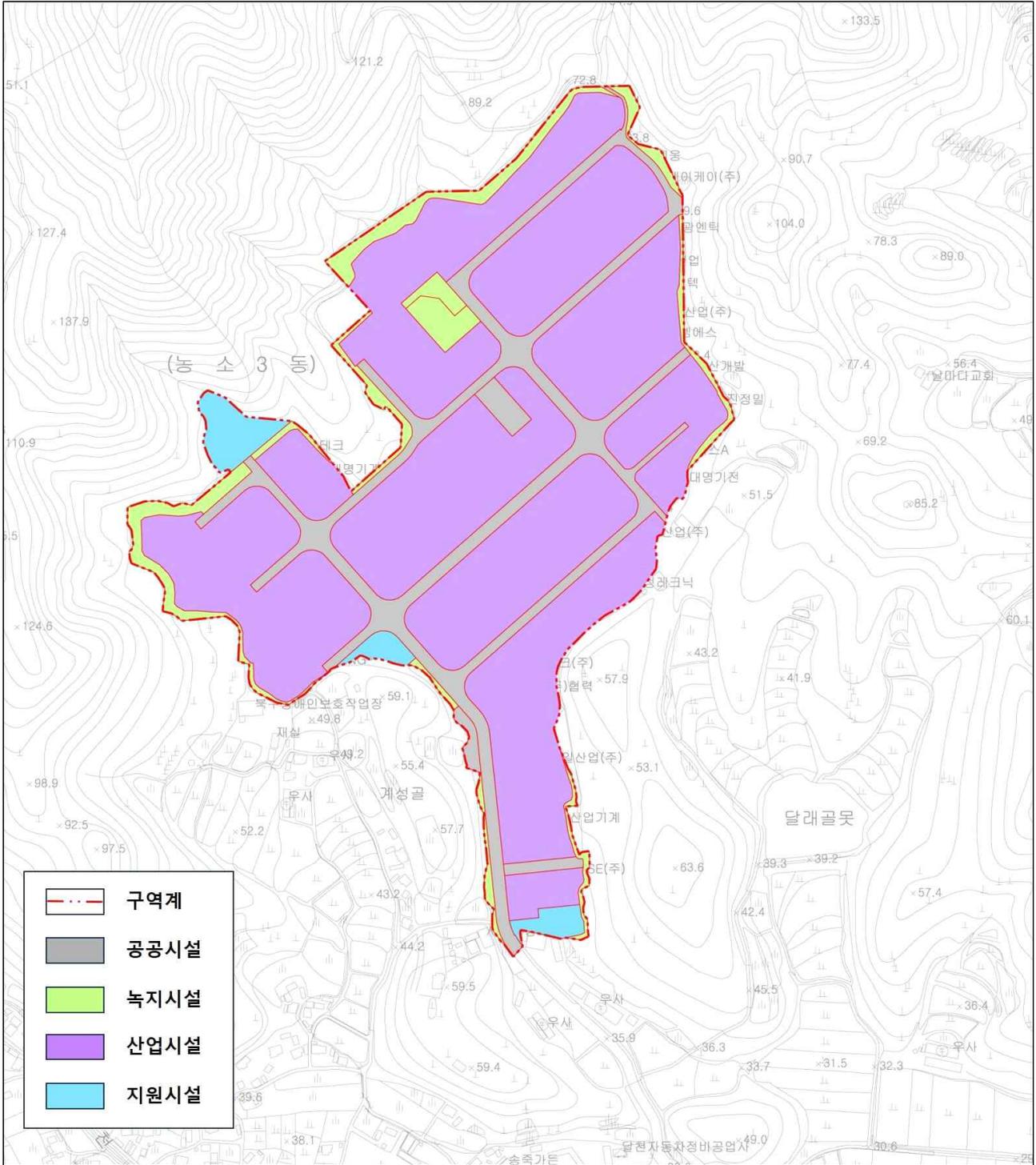
- 환경성 검토결과 부여조건 이행철저
- 근로자 복지후생시설의 지속적 확충
- 건전한 노사관행 유도로 산업평화 정착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지도 강화
- 입주계약서상의 계약사항 이행여부 관리감독 철저
- 입주기업체협의회 구성운영
- 분양용지의 불법전매, 장기유휴화 등의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

- 【붙임】** 1. 업종별 배치계획도(변경)
2. 용도별구역 평면도(변경없음)

【붙임 1】 업종별 배치계획도(변경)



【붙임 2】 용도별구역 평면도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187호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4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농서로 591	가대동 453	2023. 9. 14.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3)에 문의 또는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http://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9. 1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189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3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3. 9. 13.
2. 점용·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 설치(전력용 콘크리트 전주 12본 설치)
3. 점용·사용의 장소 : 울산광역시 복구 어물동 1240-148번지 외 10필지 일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1) 일시: 17.3m<sup>2</sup>
    - 2) 영구: 1.6m<sup>2</sup>
  - 나. 기 간
    - 1) 일시: 2023. 9. 13. ~ 2023. 9. 24.
    - 2) 영구: 2023. 9. 25. ~ 2038. 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동울산지사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복구 명촌23길 8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 - 190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31, 소로1-3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308(2022. 8. 4.)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31, 소로1-3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4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470-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31, 소로1-3호선)사업
  - 나. 명 칭: 양정동 양정초등학교 일원(소3-231, 소1-3호선) 도로개설 사업
3. 사업규모: 도로개설 L=452.0m, B=6.0~10.0m

구 분	시설명(노선명)	규 모		사업면적
		폭(m)	길이(m)	
도로	소로3-231호선	6.0	412.0	6,832.6㎡
도로	소로1-3호선	10.0	40.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2020. 6. 18. ~ 2025. 12. 31.
6.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변경)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붙임 명세서와 같음

8.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 052-241-7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와 소유권 외의 권리 등 명세

공사명: 양정동 일원(소3-231호선) 도로개설공사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연번	소재지	일지정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면적(㎡)	변경	면적(㎡)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양정동	805-1	387.7	803-1	387.7	도		울산광역시 북구				
2	양정동	800-1	137.7	802-1	137.7	대	광정빌스 테이크2차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802				
3	양정동	산104-8	10	산104-8	10	면	세익엔지니어링 회사	서울 동학구 대방동 379-2 1 층	서울시 영등포구	전월	합류	
									영등포 세우서		합류	
									울산광역시 북구		합류	
4	양정동	산104-13	869	산104-13	869	면	종O부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 19길 51, 501호	동작세우서		근저당권	
5	양정동	470-8	259	470-8	259	면		울산광역시 교육감				
6	양정동	470-7	94	470-7	94	면		울산광역시 교육감				
7	양정동	산101-9	554	산101-9	554	면	분하중세오른공 파분회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1길 42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8	양정동	470-9	7	470-9	7	면		울산광역시 교육감				
9	양정동	470-2	133	470-2	133	면		울산광역시 교육감	전월			
10	양정동	산102-1	36	산102-1	36	면	이O백	사정				사정
11	양정동	산101-10	79	산101-10	79	면	분하중세오른공 파분회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1길 42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12	양정동	산100-6	695	산100-6	695	면	김O진	울산 북구 신천동 346-5 신우원대아파트103-1205	주식회사 조흥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171-14	근저당권	
13	양정동	484-136	3	484-136	3	대	유O현	울산 중구 양정동 535-5				
14	양정동	484-134	215	484-134	215	도		울산광역시 북구				
15	양정동	484-129	9	484-129	9	도	한O수	울산 중구 양정동 484-90	전월			
16	양정동	산100-4	2,053	산100-4	2,053	면	김O진	울산 북구 신천동 346-5 신우원대아파트103-1205	주식회사 조흥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171-14	근저당권	
17	양정동	산100-2	7	산100-2	7	면		산림청	전월			
18	양정동	산98-4	854	산98-4	854	면	이O욱	울산 중구 학성1길 9-2, 2층(복합동)	울산광역시 북구		합류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구분지상권	
									한O훈	울산 중구 학성1길 9-2, 2층(복합동)	근저당권	
19	양정동	514-17	93	514-17	93	면	세O민	울산 동구 분재7길 151방어동)				
20	양정동	514-18	93	514-18	93	대		울산광역시 북구	전월			
21	양정동	514-21	13	514-22	13	대	세O민	울산 동구 분재7길 151방어동)				
22	양정동	776-46	4.9	776-46	4.9	천		건설부				
23	양정동	776-47	226.3	776-47	226.3	장		울산광역시				
계			6,832.6		6,832.6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191호

## 하천점용 허가(협의)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3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주)이제이텍 남순성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33번길 10 (구미동)		
점용 위치	울산광역시 대안동 산 368-11, 대안동 1041-1, 대안동1036, 산하동 933, 신명동 282-1, 대안동 1041-41, 신명동 285, 산하동 932-3번지	하천의 명칭	신명천, 대안천
점용 내용	지반시험	점용 면적	273㎡
점용 기간	2023. 9. 13. ~ 2023. 11. 30.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192호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울산광역시 복구의회 의결에 따라 확정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4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의회 의결일자 : 2023. 9. 1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총 계	540,556,125	100.00%	512,513,900	100.00%	28,042,225	5.47%
일반회계	536,334,555	99.22%	510,193,557	99.55%	26,140,998	5.12%
특별회계	4,221,570	0.78%	2,320,343	0.45%	1,901,227	81.94%
기타특별회계	4,221,570	0.78%	2,320,343	0.45%	1,901,227	81.9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72,076	0.01%	72,076	0.01%	0	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42,767	0.04%	259,767	0.05%	△ 17,000	△ 6.54%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1,902,208	0.35%	0	0.00%	1,902,208	순증
주차장특별회계	2,004,519	0.37%	1,988,500	0.39%	16,019	0.81%

□ 일반회계 세입내역

(단위 : 천원)

장 · 관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536,334,555	100.00%	510,193,557	100.00%	26,140,998	5.12%
100	지방세수입	88,372,408	16.48%	89,158,408	17.48%	△786,000	△0.88%
110	지방세	88,372,408	16.48%	89,158,408	17.48%	△786,000	△0.88%
200	세외수입	27,012,054	5.04%	27,264,852	5.34%	△252,798	△0.93%
210	경상적세외수입	21,062,515	3.93%	20,890,648	4.09%	171,867	0.82%
220	임시적세외수입	5,150,808	0.96%	5,580,422	1.09%	△429,614	△7.70%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98,731	0.15%	793,782	0.16%	4,949	0.62%
300	지방교부세	20,632,700	3.85%	19,350,000	3.79%	1,282,700	6.63%
310	지방교부세	20,632,700	3.85%	19,350,000	3.79%	1,282,700	6.63%
400	조정교부금등	66,770,760	12.45%	62,250,760	12.20%	4,520,000	7.26%
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66,770,760	12.45%	62,250,760	12.20%	4,520,000	7.26%
500	보조금	291,969,359	54.44%	282,135,929	55.30%	9,833,430	3.49%
510	국고보조금등	190,619,051	35.54%	184,456,250	36.15%	6,162,801	3.34%
520	시·도비보조금등	101,350,308	18.90%	97,679,679	19.15%	3,670,629	3.76%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1,577,274	7.75%	30,033,608	5.89%	11,543,666	38.44%
710	보전수입등	40,348,459	7.52%	28,636,941	5.61%	11,711,518	40.90%
720	내부거래	1,228,815	0.23%	1,396,667	0.27%	△167,852	△12.02%

□ 일반회계 세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536,334,555	100.00%	510,193,557	100.00%	26,140,998	5.12%
010	일반공공행정	22,989,059	4.29%	22,276,389	4.37%	712,670	3.20%
020	공공질서및안전	2,264,195	0.42%	2,104,201	0.41%	159,994	7.60%
050	교육	2,002,761	0.37%	1,954,761	0.38%	48,000	2.46%
060	문화및관광	26,738,950	4.99%	25,438,099	4.99%	1,300,851	5.11%
070	환경	14,496,023	2.70%	13,724,189	2.69%	771,834	5.62%
080	사회복지	269,485,142	50.25%	259,472,311	50.86%	10,012,831	3.86%
090	보건	20,736,931	3.87%	20,591,697	4.04%	145,234	0.71%
100	농림해양수산	32,137,798	5.99%	28,743,475	5.63%	3,394,323	11.81%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4,393,859	0.82%	2,722,519	0.53%	1,671,340	61.39%
120	교통및물류	18,124,934	3.38%	13,705,819	2.69%	4,419,115	32.24%
140	국토및지역개발	52,028,273	9.70%	45,567,398	8.93%	6,460,875	14.18%
160	예비비	3,418,541	0.64%	6,665,690	1.31%	△3,247,149	△48.71%
900	기타	67,518,089	12.59%	67,227,009	13.18%	291,080	0.43%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23 - 1219호

# 2023년 어린이, 임신부 및 어르신 지자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계획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의거, 2023년 어린이, 임신부 및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계획 및 의료기관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 울산광역시 복구보건소장

### ○ 사업대상 및 접종기간

구 분		접종기간	지원대상
어린이	- 2회 접종 대상자	`23.9.20.(수) ~ `24.4.30.(화)	생후 6개월~만13세 어린이 (2010.1.1.~2023.8.31.출생자)
	- 1회 접종 대상자	`23.10.5.(목) ~ `24.4.30.(화)	
임신부	-	`23.10.5.(목) ~ `24.4.30.(화)	임신부 (임신여부 증빙서류 제시 필수)
어르신	- 만 75세 이상 어르신	`23.10.11.(수) ~ `24.4.30.(화)	1948.12.31. 이전 출생자
	- 만 70~74세 어르신	`23.10.16.(월) ~ `24.4.30.(화)	1949.1.1.~1953.12.31. 출생자
	- 만 65~69세 어르신	`23.10.19.(목) ~ `24.4.30.(화)	1954.1.1.~1958.12.31. 출생자
지자체	- 만 14~64세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수급자	`23.10. 16.(월) ~ 24.2.29.(화)	1959.1.1.~2009.12.31. 출생자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수급자

\* 2회 접종 대상자: 2023.6.30.일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1회만 접종한 경우 및 처음 받는  
생후 6개월~만 8세 소아의 경우 (4주 이상 간격으로 2회 접종)

\* 1회 접종 대상자: 2023.6.30.일까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횟수가 총 2회 이상(누적)\* 있는 경우 및  
만9세 이상

○ 집중기관: 울산시티병원 외 59개소

동별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장애인 유공자 수급자
호계동 (9개소)	365호계내과의원	295-1190	●			●
	김환근내과의원	295-6996	●		●	
	울산엘리아병원	290-2100	●	●		●
	세나요양병원	290-2000	●			
	이순일내과의원	282-7588	●	●		
	청십자흥부외과의원	295-5919	●			
	한양마취통증의학과의원	293-5588	●			
	해솔요양병원	260-5577	●			
	에스정형외과	286-5800	●			
화봉동 (5개소)	굿닥터연합의원	261-7553	●			
	굿모닝이비인후과의원	287-4287	●	●	●	
	김유홍내과의원	288-9693	●	●	●	
	우리가정의학과의원	289-2075	●	●		●
	홍찬의소아과의원	281-0756	●	●	●	
천곡동 (6개소)	개구쟁이소아청소년과의원	294-7504	●	●	●	●
	민사랑내과의원	292-1111	●	●	●	
	새현대의원	291-3770	●	●	●	
	연희가정의학과의원	295-0800	●	●		
	영남이비인후과의원	286-8277	●	●	●	
	정안요양병원	295-2888	●			
매곡동 (7개소)	다정의원	282-0127	●	●	●	
	드림아이의원	295-0129	●	●	●	
	봄소아청소년과의원	286-1311	●	●	●	
	상쾌한이비인후과의원	281-1231	●	●	●	
	서울아산이비인후과의원	977-1000	●	●	●	
	아이마음아동병원	761-5170	●	●	●	●
	웰당이진우내과의원	292-7179	●	●		
신천동 (6개소)	복음요양병원	268-7000	●	●	●	
	열린이비인후과의원	291-2975	●	●		
	울산아동병원	282-7171	●	●	●	●
	엠디한방병원	286-3355	●			
	한빛이비인후과의원	286-7613	●	●		
	호계연합내과방사선과의원	286-7585	●			
양정동 (5개소)	BB요양병원	716-1020	●			
	윤가정의학과의원	287-2300	●	●	●	
	이기호내과의원	287-6187	●			
	하나정형외과의원	287-9852	●			
	한소아청소년과의원	288-0075	●	●	●	●
연암동 (3개소)	김현경의원	287-0314	●	●		
	울산시티병원	280-9000	●	●	●	
	현대연합의원	291-9800	●	●		
송정동 (5개소)	몸바른의원	222-7575	●	●	●	
	쥬라기소아청소년과의원	251-3336	●	●	●	

동별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장애인 유공자 수급자
	탐이비인후과의원	249-7582	●	●	●	●
	송정퍼스트이비인후과의원	297-8200	●	●	●	
	송정연세의원	289-1111	●			
명촌동 (3개소)	김은정소아과의원	288-5510	●	●	●	
	이내과의원	289-1066	●	●		●
	행복한내과의원	283-2299	●	●		
상안동 (4개소)	농소요양병원	282-7002	●			
	조윤성내과의원	293-7171	●			
	코끼리이비인후과의원	294-8275	●	●	●	
	북울산병원	293-8888	●	●	●	
중산동 (2개소)	김영근의원	282-3770	●	●		
	이강우소아청소년과의원	268-6575	●	●	●	
염포동 (2개소)	구암의원	287-7246	●	●		●
	함께하는의원	289-7046	●	●	●	
산하동 (2개소)	한결의원	268-8227	●	●	●	●
	강동오션키즈의원	258-1004	●	●	●	
정자동	강동의원	298-7534	●			●

※ 연령별 접종일정을 지키지 않을 시 무료접종이 안됩니다.

※ 의료기관 방문 전 ☎전화로 백신보유 여부를 확인 후 방문하세요.

※ 보건소에서는 접종하지 않습니다!

※ 문의: 북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52-241-8778, 8133, 8246~7)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23 - 1230호

## 울산 복구 인애어린이집 증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공고기간 : 2023. 9. 11.(월) ~ 2023. 9. 18.(월)

2. 사업내용

사 업 내 역

가. 사업명 : 울산 북구 인애어린이집 증축공사

나. 사업주체 :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

다. 시 공 자 : 세평종합건설(주)

라. 설 계 자 : (주)가나건축사사무소

마. 감 리 자 : 건축그룹 원 종합건축사사무소

바. 사업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85-1번지
- 대지면적 : 1,220㎡
- 연 면 적 : 564.24㎡
- 규 모 : 지상3층, 1개동
- 세 대 수 : 해당없음
- 공사기간 : 2023. 9. 11. ~ 2024. 3. 8(6개월)
- 허 가 일 : 2014. 8. 13.
- 착공신고수리일 : 착공전
- 공 사 비 : 715,000,000 원 (V.A.T 제외)

사. 안전점검비용

- 안전점검비용 : 4,000,000원 (2회)

○ 기초금액 : 4,400,000원

○ **예정가격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  
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  
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  
평균금액

### 3. 안전점검 내용

#### 가. 수행예정표

항 목	횟 수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외	2	2,000,000	4,000,000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7]안전점검대가요율
계	2		4,000,000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점검시기 : 시공자와 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4. 입찰접수 개시(마감)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3. 9. 11.(월) 18: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3. 9. 18.(월) 17:00

다.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라. 개찰일시 : 2023. 9. 19.(화) 13:0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입찰집행관 PC)

#### 바. 유의사항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같음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약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확정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86.745%)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에 종합평점 9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 5.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입찰가격 참가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3. 9. 19.(화) 13:00까지

※ 적격심사대상이므로 확인서류 필히 제출(미제출 시 자격 미달로 선정제외)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1층)

### 다. 유의사항

-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수행기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건축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3)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열람·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3. 9. 20.(수) 18:00까지(근무시간 내에 한함)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1층)

다. 다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2) 자기평가표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자기평가표를 말함
- 3) 참여기술인의 최근 7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상기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 할 것(미 명기제출 시 대상제외)

### 라.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기술자의 최근 7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방문·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촬영복사 불가)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7.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가. 응모자격**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348호(2023. 3. 3.) 우리 구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등록한 업체로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심사기준** : 지정신청한 참여기관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주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 (공고일 포함)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전자입찰서 및 사실확인서류 제출 ⇒ 개찰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 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아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능력	40점	○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40\text{점}$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86.745%)	6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 평점 = $60 - 4 \times \left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합계	100점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함.**

※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지정 및 단독입찰일 경우 단독입찰 한 자 선정. 단,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있는

**자료 한정**

- 4)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용역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됨.
- 5)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 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9. 기타 유의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①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 ②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④ 응모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 ~ 3순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일로부터 2일간(공휴일 제외) 반환하고 그 이후에는 폐기하오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함.

- 사.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총괄표 상의 자기평가점수만 확인하고 서류 검토 및 평가는 하지 않으며, 세부평가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함.
- 아.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 차.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건축물(2중시설물)의 정기·초기안전점검 비용으로, 기타 건설기계·가설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 기준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 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 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 ※ 안전점검 수행기관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 당일까지도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052-241-8012)로 문의바랍니다.

## 【참고자료 1】

##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 ①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http://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 ③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 ④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 ⑤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참 고 사 항> -----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 [ 별표 1 ]

##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 1. 총괄

심사항목	배점
사업수행능력	40점
입찰가격	60점

## 2.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능력	40점	<p>평가점수</p> $\circ \text{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40\text{점}$ <p>*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p>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86.745%)	60점	<p>○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p> $\ast \text{ 평점} = 60 - 4 \times \left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p>*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p>
합계	10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2019.10.08.]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준용

## [ 별표 2-1 ]

## ■ 5천만원 미만 사업수행능력 배점표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1. 참여기술인	50					
자격점수	25	책임 기술인의 기술자격 - 특급기술인 : 25점 - 고급 기술인 이하 : 실격				
교육훈련	25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안전점검교육 (「건설기술 진흥법」 제100조제6항에 따른 교육 이수) - 교육이수 : 25점 - 교육 미이수 : 실격				
2. 신용도	50					
부실벌점	20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시정’또는‘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매우불량’ 처분은 0.7점 감점(‘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업무정지등	20	- 최근 1년간 관련규정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재정상태 건설도 (신용평가등급)	10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회 사 채	BBB- 이상	BBB- 이상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10	9	8	0
총 계	100					

[ 별표 2-2 ]

■ 5천만원 이상 사업수행능력 배점표

구분	세부사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55											
책임기술인			25											
사업책임 (30점)	자 격	-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6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하며 미달 시 실격										
	경 력	년수	13	<table border="1"> <tr> <td>10년 이상</td> <td>10년 미만 9년 이상</td> <td>9년 미만 8년 이상</td> <td>8년 미만 7년 이상</td> <td>7년 미만</td> </tr> <tr> <td>13</td> <td>11.7</td> <td>10.4</td> <td>9.1</td> <td>7.8</td> </tr> </table>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13	11.7	10.4	9.1	7.8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13	11.7	10.4	9.1	7.8										
실 적 (최근7년)	건수	12	<table border="1"> <tr> <td>10건 이상</td> <td>10건 미만 9건 이상</td> <td>9건 미만 8건 이상</td> <td>8건 미만 7건 이상</td> <td>7건 미만</td> </tr> <tr> <td>12</td> <td>10.8</td> <td>9.6</td> <td>8.4</td> <td>7.2</td> </tr> </table>	10건 이상	10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12	10.8	9.6	8.4	7.2	
10건 이상	10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12	10.8	9.6	8.4	7.2										
분야별 책임기술인			30											
분야별 책임 (25점)	등 급	해당분야	6	<table border="1"> <tr> <td>특급기술인</td> <td>고급기술인</td> <td>중급기술인</td> <td>초급기술인</td> </tr> <tr> <td>6</td> <td>6</td> <td>5.5</td> <td>5</td> </tr> </table>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6	6	5.5	5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6	6	5.5	5										
경 력	년수	12	<table border="1"> <tr> <td>7년 이상</td> <td>7년 미만 6년 이상</td> <td>6년 미만 5년 이상</td> <td>5년 미만 4년 이상</td> <td>4년 미만</td> </tr> <tr> <td>12</td> <td>10.8</td> <td>9.6</td> <td>8.4</td> <td>7.2</td> </tr> </table>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12	10.8	9.6	8.4	7.2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12	10.8	9.6	8.4	7.2										
실 적 (최근7년)	건수	12	<table border="1"> <tr> <td>8건 이상</td> <td>8건 미만 7건 이상</td> <td>7건 미만 6건 이상</td> <td>6건 미만 5건 이상</td> <td>5건 미만</td> </tr> <tr> <td>12</td> <td>10.8</td> <td>9.6</td> <td>8.4</td> <td>7.2</td> </tr> </table>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12	10.8	9.6	8.4	7.2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12	10.8	9.6	8.4	7.2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25											
	최근5년간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건수	25	<table border="1"> <tr> <td>5건 이상</td> <td>5건 미만 4건 이상</td> <td>4건 미만 3건 이상</td> <td>3건 미만 2건 이상</td> <td>2건 미만</td> </tr> <tr> <td>25</td> <td>22.5</td> <td>20</td> <td>17.5</td> <td>15</td> </tr> </table>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25	22.5	20	17.5	15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25	22.5	20	17.5	15										
다. 신용도			10											
	부실벌점	절대평가	4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시정’또는‘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매우불량’ 처분은 0.7점 감점(‘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구분	세부사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업무정지 등		절대평가	3	- 최근 1년간 관련규정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 급	절대평가	3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회 사 채</td> <td>A- 이상</td> <td>A- 미만 BBB- 이상</td> <td>BBB- 미만 B- 이상</td> <td>CC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어음</td> <td>A2- 이상</td> <td>A2- 미만 A3- 이상</td> <td>A3- 미만 B- 이상</td> <td>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신용</td> <td>A- 이상</td> <td>A- 미만 BBB- 이상</td> <td>BBB- 미만 B- 이상</td> <td>CC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점 수</td> <td>3.0</td> <td>2.7</td> <td>2.4</td> <td>2.1</td> <td>0</td> </tr> </table>	회 사 채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 이상	A2- 미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3.0	2.7	2.4	2.1
회 사 채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 이상	A2- 미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3.0	2.7	2.4	2.1	0																							
<b>라. 업무중첩도</b>				<b>10</b>																								
	책임기술인		절대평가	6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남은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6월 미만</td> <td>6월 이상 9월 미만</td> <td>9월 이상 12월 미만</td> <td>12월 이상 15월 미만</td> <td>15월 이상</td> </tr> <tr> <td>6.0</td> <td>5.4</td> <td>4.8</td> <td>4.2</td> <td>3.6</td> </tr> </table>	6월 미만	6월 이상 9월 미만	9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6.0	5.4	4.8	4.2	3.6													
	6월 미만	6월 이상 9월 미만	9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6.0	5.4	4.8	4.2	3.6																								
분야별 책임기술인		절대평가	4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남은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6월 미만</td> <td>6월 이상 9월 미만</td> <td>9월 이상 12월 미만</td> <td>12월 이상 15월 미만</td> <td>15월 이상</td> </tr> <tr> <td>4.0</td> <td>3.6</td> <td>3.2</td> <td>2.8</td> <td>2.4</td> </tr> </table>	6월 미만	6월 이상 9월 미만	9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4.0	3.6	3.2	2.8	2.4														
6월 미만	6월 이상 9월 미만	9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4.0	3.6	3.2	2.8	2.4																								

## &lt;첨부 1&gt;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서식 1]

접수번호	
------	--

원본, 부분 구분 표기

**사업명 : 000 ~ 000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023. . .

회사명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수행기관명

[서식 2]

# 수행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기재)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건축주택과장

제목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 주택건설사업장 안전점검에 참여하고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분 1부)

2.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 3부. 끝.

**[수행기관명] 대표자 [인]**

[서식 3]

**참여기술인 총괄****참여기술인 총괄**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직 위	기술인 등 급	자격증 종 류	비고
○ 사업책임 기 술 인		000000-***** (만00세)				특급자격 취득일: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		000000-***** (만00세)				

※ 사업책임기술인의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00조제6항의 자격을 갖춘 자 이  
어야 하며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술인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한 기술등급을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4]

## 참여기술인 자격, 경력, 실적

### 1. 자격 및 경력

성 명		근 무 부 서		직 위	
연 령	만 세	전 공 (학 위)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 득 일		
해당 분야 전체 경력		년 월	비 고		
기 간	년 월	업 체 명	근무부서	직 위	비 고
“※이력사항기재란”					

### 2. 해당분야 경력

연번	참여 기간	참여 일수	용역명	발주자	공사 종류	직무 분야	전문 분야	가중치	환산 일수

### 3. 해당분야 실적

하천 구분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금액 (백만원)	참여기간 (년 월)	담당 업무	소속 회사	직위	발주청

### 4. 교육훈련 실적

참여기술인명	교육구분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비 고
			. . . ~ . . .	( 주 )
점 수				

- ※ 경력의 참여일수 란에는 경력증명서의 “인정일”을 기재한다.
- ※ 해당분야 경력을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서 발췌하여 작성하지 아니하고 “경력증명서로 같음” 할 경우 해당분야 경력은 미제출 한 것으로 처리한다.
-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는 참여기술인별 1부만 첨부한다.
- ※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다.(원본 제출)
-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이수한 교육실적을 기재한다.
- ※ 개인별 증빙서류를 첨부한다.(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 교육기간에서의 1주란 5일 이상이고 교육시간이 35시간 이상을 말함
- ※ 교육수료증을 증빙서류로 첨부
-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5]

##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연번	용역명	1·2종 시설물 여부	과업 개요	과업기간 (년 월)	준공금액 (천원)	지분율 (%)	적용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1				** . ** . ** ~ ** . ** . ** (년 월)					
2				** . ** . ** ~ ** . ** . ** (년 월)					
	계	건							

※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준공실적에 한하며, 연도란에 “○년 ○월○일~○년○월○일”로 기재(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이나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제외)

※ 1, 2종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과업 개요란 에는 용역 수문 규격(H\*B\*련) 등을 정확히 기재

※ 하도급일 경우 준공금액은 하도급 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명과 하도급 내용기재(발주처의 하도급 승인서류 첨부)

※ 공동도급일 경우 준공금액은 도급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총 준공금액을 기재

※ 발주자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첨부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6]

##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용역명	발주처	준공금액 (천원)	용역기간 ( ~ )	평가결과	처분일자	비고
건						

-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불량’(‘시정’,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불량’ 처분은 0.5점, ‘매우불량’ 처분은 0.7점(‘시정’ 처분은 0.3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받은 경우 기재한다.
-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표기
-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7]

##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현황

구분	업 체 명 참여기술인	처분 종류	기간 (월)	사유	관련규정	처분청	비고
수 행 기 관			. . ~ . . ( 월)				
			. . ~ . . ( 월)				
	계						
참 여 기 술 인			. . ~ . . ( 월)				
			. . ~ . . ( 월)				
	계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련규정(「건설기술 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하여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처분청의 확인서 첨부)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 기간은 “ ~ (○월)”로 기재한다.

※ 해당사업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한다.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식 8]

### 벌점 현황

구분	업 체 명 참여기술인	측정기관	부과일시	벌점점수 (점)	누계평균 벌점점수 (점)	감점되는 점수 (점)	비고
수 행 기 관							
		소계					
참 여 기 술 인							
		소계					

※ 감점되는 점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 제4호 가목

- 누계평균벌점이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 0.2점
- 누계평균벌점이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 0.5점
- 누계평균벌점이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1.0점
- 누계평균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 2.0점
- 누계평균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3.0점
- 누계평균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 5.0점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9]

**재정상태 건실도**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설립년도		
사업자등록번호		
신용등급 평가내용	재무결산일 기준일	
	등급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신용등급	
	발행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한다.

※ 허위로 기재하거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한다.

[서식 10]

## 참여기술인 업무 증첩도

구분	성명	용역업무 참여현황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역명	발주청	용역비 (백만원 )	참여기간				
					분야	참여 기간	중복 기간	중복 일수	
사 업 책 임 기술인									
	계	건							
분야별 책 임 기술인									
	소계	건							
	합계								

※ 용역업무 참여현황에는 타 용역에서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 중인 용역만 작성대상으로 한다.

※ 참여기간은 당해년도 기간이 아닌 실용역 전체기간을 기재

※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용역 중 잔여기간이 공고일 현재 1개월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모두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해당 참여기술인은 0점 처리

[서식 11-1]

##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5천만원 미만)

□ 회사명 : ○○○○○○○(100%)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100	
1. 참여기술인	계	50	
	책임 기술인의 기술자격	25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안전점검 교육 (「건설기술진흥법」 제100조제6항에 따른 교육 이수)	25	
2. 신용도	계	50	
	부실벌점	20	
	업무정지 등	20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	10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계		
	책임 기술인의 기술자격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안전점검 교육 (「건설기술진흥법」 제100조제6항에 따른 교육 이수)		
2. 신용도	계		
	부실벌점		
	업무정지 등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		

[서식 11-2]

##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5천만원 이상)

□ 회사명 : ○○○○○○(100%)

- 참여기술인 : 사업책임 ○○○, 분야책임 ○○○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1. 참여 기술인	합 계		
	사업책임 기술인	계	
		자 격	
		경 력	
		실 적   건 수	
	분야별 책 임 기술인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건 수	
	2. 유사용역수행실적	계	
건 수			
3. 신용도	계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업무정지 등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4. 업무중첩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 기술인	합 계			
	사업책임 기술인	계		
		자 격		
		경 력		
		실 적(건수)		
	분야별 책임 기술인	계		
		등 급		
		경 력		
		실 적(건수)		
	2. 유사용역수행실적		계	
			실 적(건수)	
	3. 신용도	계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업무정지 등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4. 업무중첩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가중치를 반영한 인정 일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 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 자료로 제출 가능)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1. 공 사 명	울산 북구 천곡동 00빌딩 신축공사				
2. 시 공 사	삼대종합건설(주)				
3. 발 주 자	배진근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주)행복종합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5. 공사개요					
현장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산 175	공사기간	2023.07.15~2023.12.30		
공사내용	규모: 지상5층 용도: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6.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0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7. 안전점검 내용	거푸집동바리5M 이상공사(2회)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인					
상 호 (법인명)	삼대종합건설(주)	대 표 자 (생년월일)	김 형 우	법인등록번호	181211-0037892
소재지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16길 29 1001호		전화번호	052-243-6642	
직무분야	건축분야 [ 0 ] 토목분야 [ 0 ] 종합분야 [ ]		등록번호 자격번호	울산07-007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위 건설공사의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3 년 06 월 28 일

입찰자(대표자)

삼대종합건설(주) 대표이사 김형우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증빙서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 등 3. 사업자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각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	--	-----------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 - 348호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00조·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에서 발주(인·허가 사항 포함)하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모집을 실시하고 그 등록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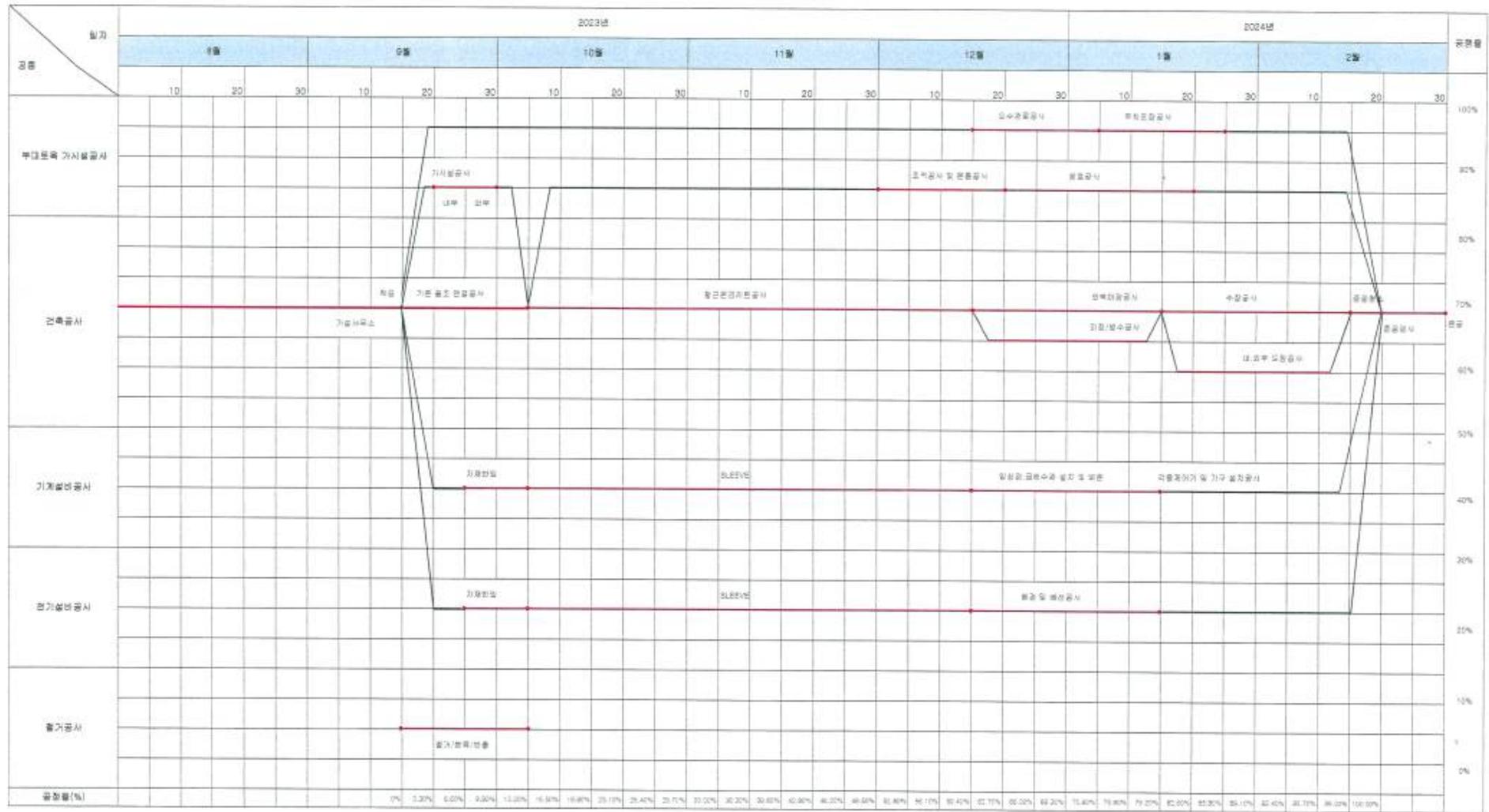
2023년 3월 3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 건축4, 종합2

연번	수행기관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분야	비고
1	산업안전관리(주)	윤영만	제174호	종합	
2	오름구조안전기술원(주)	박대준외1	울산 제14호	토목(항만), 건축	
3	(주)하이콘엔지니어링	신상훈	울산 제10호	건축	
4	(주)세명구조엔지니어링	강경원외1	울산 제5호	건축	
5	(주)오에스엔지니어링	한진원	제274호	건축	
6	(주)대흥종합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정태석	울산 제24호	종합	

# 공사 예정 공정표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23 - 1233호

# - 현대자동차(주) 전기차 공장 신축공사 - 공장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공고기간 : 2023. 9. 12.(화) ~ 2023. 9. 18.(월)

2. 사업내용

사 업 내 역

가. 사업명 : 현대자동차(주) 전기차공장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현대자동차(주)

다. 시 공 자 : 현대엔지니어링(주)

라. 설 계 자 : 현대엔지니어링(주)

마. 감 리 자 : 토팩엔지니어링

바. 사업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1-2번지 외 89필지
- 대지면적 : 743,273㎡
- 연 면 적 : 326,791.42㎡
- 규 모 : 지상5층 등, 8개동
- 세 대 수 : 해당없음
- 공사기간 : 2023. 9. ~ 2025. 5.(21개월)
- 허 가 일 : 2023. 7. 19.
- 착공신고수리일 : 2023. 9. 8.
- 공 사 비 : 700,000,000,000 원

사. 안전점검비용

- 안전점검비용 : 72,800,000원 (1종시설물)

○ 기초금액 : 80,080,000원

○ 예정가격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  
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  
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  
평균금액

### 3. 안전점검 내용

#### 가. 수행예정표

항 목	횟 수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초기점검(준공직전)	1	23,800,000	23,800,000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7]안전점검대가요율
정기안전점검	5	9,800,000	49,000,000	
계	6	33,600,000원	72,8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 나. 점검시기 : 시공자와 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4. 입찰접수 개시(마감)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3. 9. 12.(화) 11: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3. 9. 18.(월) 17:00

다.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라. 개찰일시 : 2023. 9. 19.(화) 13:0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입찰집행관 PC)

#### 바. 유의사항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같음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약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확정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86.745%)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에 종합평점 9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 5.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입찰가격 참가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3. 9. 15.(금) 17:00까지

※ 적격심사대상이므로 확인서류 필히 제출(미제출 시 자격 미달로 선정제외)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1층)

### 다. 유의사항

-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수행기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건축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3)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열람.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3. 9. 20.(수) 18:00까지(근무시간 내에 한함)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1층)

### 다. 다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2) 자기평가표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자기평가표를 말함
- 3) 참여기술인의 최근 7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상기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 할 것(미 명기제출 시 대상제외)

### 라.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기술자의 최근 7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방문·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촬영복사 불가)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 7.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가. 응모자격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348호(2023. 3. 3.)** 우리 구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등록한 업체**로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심사기준 : 지정신청한 참여기관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주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  
(공고일 포함)

##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전자입찰서 및 사실확인서류 제출 ⇒ 개찰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 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아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능력	40점	$\text{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40\text{점}$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86.745%)	6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text{평점} = 60 - 4 \times \left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합계	100점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함.**

※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지정 및 단독입찰일 경우 단독입찰 한 자 선정. 단,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있는 자로 한정

- 4)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용역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됨.
- 5)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 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6)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 9. 기타 유의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①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 ②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④ 응모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 ~ 3순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일로부터 2일간(공휴일 제외) 반환하고 그 이후에는 폐기하오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함.

- 사.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총괄표 상의 자기평가점수만 확인하고 서류 검토 및 평가는 하지 않으며, 세부평가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함.
- 아.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 차.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건축물(2중시설물)의 정기·초기안전점검 비용으로, 기타 건설기계·가설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 기준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 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 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 ※ 안전점검 수행기관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 당일까지도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052-241-8014)로 문의바랍니다.

## 【참고자료 1】

##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 ①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http://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 ③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 ④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 ⑤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참 고 사 항> -----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 [ 별표 1 ]

##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 1. 총괄

심사항목	배점
사업수행능력	40점
입찰가격	60점

## 2.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능력	40점	<p>평가점수</p> $\circ \text{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40\text{점}$ <p>*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p>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86.745%)	60점	<p>○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p> $\ast \text{ 평점} = 60 - 4 \times \left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p>*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p>
합계	10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2019.10.08.]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준용

## [ 별표 2-1 ]

## ■ 5천만원 미만 사업수행능력 배점표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1. 참여기술인	50					
자격점수	25	책임 기술인의 기술자격 - 특급기술인 : 25점 - 고급 기술인 이하 : 실격				
교육훈련	25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안전점검교육 (「건설기술 진흥법」 제100조제6항에 따른 교육 이수) - 교육이수 : 25점 - 교육 미이수 : 실격				
2. 신용도	50					
부실벌점	20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시정’또는‘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매우불량’ 처분은 0.7점 감점(‘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업무정지등	20	- 최근 1년간 관련규정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재정상태 건설도 (신용평가등급)	10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회 사 채	BBB- 이상	BBB- 이상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10	9	8	0
총 계	100					

[ 별표 2-2 ]

■ 5천만원 이상 사업수행능력 배점표

구분	세부사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55											
책임기술인			25											
사업책임 (30점)	자 격	-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6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하며 미달 시 실격										
	경 력	년수	13	<table border="1"> <tr> <td>10년 이상</td> <td>10년 미만 9년 이상</td> <td>9년 미만 8년 이상</td> <td>8년 미만 7년 이상</td> <td>7년 미만</td> </tr> <tr> <td>13</td> <td>11.7</td> <td>10.4</td> <td>9.1</td> <td>7.8</td> </tr> </table>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13	11.7	10.4	9.1	7.8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13	11.7	10.4	9.1	7.8										
실 적 (최근7년)	건수	12	<table border="1"> <tr> <td>10건 이상</td> <td>10건 미만 9건 이상</td> <td>9건 미만 8건 이상</td> <td>8건 미만 7건 이상</td> <td>7건 미만</td> </tr> <tr> <td>12</td> <td>10.8</td> <td>9.6</td> <td>8.4</td> <td>7.2</td> </tr> </table>	10건 이상	10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12	10.8	9.6	8.4	7.2	
10건 이상	10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12	10.8	9.6	8.4	7.2										
분야별 책임기술인			30											
분야별 책임 (25점)	등 급	해당분야	6	<table border="1"> <tr> <td>특급기술인</td> <td>고급기술인</td> <td>중급기술인</td> <td>초급기술인</td> </tr> <tr> <td>6</td> <td>6</td> <td>5.5</td> <td>5</td> </tr> </table>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6	6	5.5	5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6	6	5.5	5										
경 력	년수	12	<table border="1"> <tr> <td>7년 이상</td> <td>7년 미만 6년 이상</td> <td>6년 미만 5년 이상</td> <td>5년 미만 4년 이상</td> <td>4년 미만</td> </tr> <tr> <td>12</td> <td>10.8</td> <td>9.6</td> <td>8.4</td> <td>7.2</td> </tr> </table>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12	10.8	9.6	8.4	7.2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12	10.8	9.6	8.4	7.2										
실 적 (최근7년)	건수	12	<table border="1"> <tr> <td>8건 이상</td> <td>8건 미만 7건 이상</td> <td>7건 미만 6건 이상</td> <td>6건 미만 5건 이상</td> <td>5건 미만</td> </tr> <tr> <td>12</td> <td>10.8</td> <td>9.6</td> <td>8.4</td> <td>7.2</td> </tr> </table>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12	10.8	9.6	8.4	7.2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12	10.8	9.6	8.4	7.2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25											
	최근5년간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건수	25	<table border="1"> <tr> <td>5건 이상</td> <td>5건 미만 4건 이상</td> <td>4건 미만 3건 이상</td> <td>3건 미만 2건 이상</td> <td>2건 미만</td> </tr> <tr> <td>25</td> <td>22.5</td> <td>20</td> <td>17.5</td> <td>15</td> </tr> </table>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25	22.5	20	17.5	15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25	22.5	20	17.5	15										
다. 신용도			10											
	부실벌점	절대평가	4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시정’또는‘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매우불량’ 처분은 0.7점 감점(‘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구분	세부사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업무정지 등		절대평가	3	- 최근 1년간 관련규정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재정상태 건설도	신용평가 등 급	절대평가	3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회 사 채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 이상	A2- 미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3.0	2.7	2.4	2.1	0	
<b>라. 업무중첩도</b>				<b>10</b>							
	책임기술인		절대평가	6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남은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6월 미만	6월 이상 9월 미만	9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6.0	5.4	4.8	4.2	3.6		
	분야별 책임기술인		절대평가	4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남은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6월 미만	6월 이상 9월 미만	9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4.0	3.6	3.2	2.8	2.4		

## &lt;첨부 1&gt;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서식 1]

접수번호	
------	--

원본, 부분 구분 표기

**사업명 : 000 ~ 000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023. . .

회사명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수행기관명

[서식 2]

# 수행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기재)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건축주택과장

제목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 주택건설사업장 안전점검에 참여하고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분 1부)

2.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 3부. 끝.

**[수행기관명] 대표자 [인]**

[서식 3]

**참여기술인 총괄****참여기술인 총괄**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직 위	기술인 등 급	자격증 종 류	비고
○ 사업책임 기 술 인		000000-***** (만00세)				특급자격 취득일: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		000000-***** (만00세)				

※ 사업책임기술인의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00조제6항의 자격을 갖춘 자 이  
어야 하며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술인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한 기술등급을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4]

## 참여기술인 자격, 경력, 실적

### 1. 자격 및 경력

성 명		근 무 부 서		직 위	
연 령	만 세	전 공 (학 위)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 득 일		
해당 분야 전체 경력		년 월	비 고		
기 간	년 월	업 체 명	근무부서	직 위	비 고
“※이력사항기재란”					

### 2. 해당분야 경력

연번	참여 기간	참여 일수	용역명	발주자	공사 종류	직무 분야	전문 분야	가중치	환산 일수

### 3. 해당분야 실적

하천 구분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금액 (백만원)	참여기간 (년 월)	담당 업무	소속 회사	직위	발주청

### 4. 교육훈련 실적

참여기술인명	교육구분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비 고
			... ~ ...	( 주)
점 수				

- ※ 경력의 참여일수 란에는 경력증명서의 “인정일”을 기재한다.
- ※ 해당분야 경력을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서 발췌하여 작성하지 아니하고 “경력증명서로 같음” 할 경우 해당분야 경력은 미제출 한 것으로 처리한다.
-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는 참여기술인별 1부만 첨부한다.
- ※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다.(원본 제출)
-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이수한 교육실적을 기재한다.
- ※ 개인별 증빙서류를 첨부한다.(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 교육기간에서의 1주란 5일 이상이고 교육시간이 35시간 이상을 말함
- ※ 교육수료증을 증빙서류로 첨부
-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5]

##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연번	용역명	1·2종 시설물 여부	과업 개요	과업기간 (년 월)	준공금액 (천원)	지분율 (%)	적용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1				**.*.*.* ~ **.*.*.* (년 월)					
2				**.*.*.* ~ **.*.*.* (년 월)					
	계	건							

※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준공실적에 한하며, 연도란에 “○년 ○월○일~○년○월○일”로 기재(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이나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제외)

※ 1, 2종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과업 개요란 에는 용역 수문 규격(H\*B\*련) 등을 정확히 기재

※ 하도급일 경우 준공금액은 하도급 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명과 하도급 내용기재(발주처의 하도급 승인서류 첨부)

※ 공동도급일 경우 준공금액은 도급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총 준공금액을 기재

※ 발주자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첨부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6]

##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용역명	발주처	준공금액 (천원)	용역기간 ( ~ )	평가결과	처분일자	비고
건						

-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불량’(‘시정’,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불량’ 처분은 0.5점, ‘매우불량’ 처분은 0.7점(‘시정’ 처분은 0.3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받은 경우 기재한다.
-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표기
-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7]

##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현황

구분	업 체 명 참여기술인	처분 종류	기간 (월)	사유	관련규정	처분청	비고
수 행 기 관			. . ~ . ( 월)				
			. . ~ . ( 월)				
	계						
참 여 기 술 인			. . ~ . ( 월)				
			. . ~ . ( 월)				
	계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련규정(「건설기술 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하여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처분청의 확인서 첨부)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 기간은 “ ~ (○월)”로 기재한다.

※ 해당사업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한다.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식 8]

### 벌점 현황

구분	업 체 명 참여기술인	측정기관	부과일시	벌점점수 (점)	누계평균 벌점점수 (점)	감점되는 점수 (점)	비고
수 행 기 관							
		소계					
참 여 기 술 인							
		소계					

※ 감점되는 점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 제4호 가목

- 누계평균벌점이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 0.2점
- 누계평균벌점이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 0.5점
- 누계평균벌점이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1.0점
- 누계평균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 2.0점
- 누계평균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3.0점
- 누계평균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 5.0점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9]

## 재정상태 건실도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설립년도		
사업자등록번호		
신용등급 평가내용	재무결산일 기준일	
	등급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신용등급	
	발행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한다.

※ 허위로 기재하거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한다.

[서식 10]

## 참여기술인 업무 증첩도

구분	성명	용역업무 참여현황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역명	발주청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분야	참여 기간	중복 기간	중복 일수	
사 업 책 임 기술인									
	계	건							
분야별 책 임 기술인									
	소계	건							
	합계								

※ 용역업무 참여현황에는 타 용역에서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 중인 용역만 작성대상으로 한다.

※ 참여기간은 당해년도 기간이 아닌 실용역 전체기간을 기재

※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용역 중 잔여기간이 공고일 현재 1개월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모두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해당 참여기술인은 0점 처리

[서식 11-1]

##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5천만원 미만)

□ 회사명 : ○○○○○○○(100%)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100	
1. 참여기술인	계	50	
	책임 기술인의 기술자격	25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안전점검 교육 (「건설기술진흥법」 제100조제6항에 따른 교육 이수)	25	
2. 신용도	계	50	
	부실벌점	20	
	업무정지 등	20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	10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계		
	책임 기술인의 기술자격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안전점검 교육 (「건설기술진흥법」 제100조제6항에 따른 교육 이수)		
2. 신용도	계		
	부실벌점		
	업무정지 등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		

[서식 11-2]

##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5천만원 이상)

□ 회사명 : ○○○○○○(100%)

- 참여기술인 : 사업책임 ○○○, 분야책임 ○○○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1. 참여 기술인	합 계		
	사업책임 기술인	계	
		자 격	
		경 력	
		실 적   건 수	
	분야별 책 임 기술인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건 수	
	2. 유사용역수행실적		계
		건 수	
3. 신용도	계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업무정지 등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4. 업무중첩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 기술인	합 계			
	사업책임 기술인	계		
		자 격		
		경 력		
		실 적(건수)		
	분야별 책임 기술인	계		
		등 급		
		경 력		
		실 적(건수)		
	2. 유사용역수행실적		계	
			실 적(건수)	
	3. 신용도	계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업무정지 등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4. 업무중첩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가중치를 반영한 인정 일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 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 자료로 제출 가능)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348호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00조·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에서 발주(인·허가 사항 포함)하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모집을 실시하고 그 등록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3. 3. 3.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 건축4, 종합2

연번	수행기관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분야	비고
1	산업안전관리(주)	윤영만	제174호	종합	
2	오름구조안전기술원(주)	박대준외1	울산 제14호	토목(항만), 건축	
3	(주)하이콘엔지니어링	신상훈	울산 제10호	건축	
4	(주)세명구조엔지니어링	강경원외1	울산 제5호	건축	
5	(주)오에스엔지니어링	한진원	제274호	건축	
6	(주)대흥종합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정태석	울산 제24호	종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9호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 공 사 명	국내EV신공장 건설		
2. 시 공 사	현대엔지니어링(주)		
3. 발 주 자	현대자동차(주)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트랙엔지니어링		
5. 공사개요			
공 사 비	700,000,000,000 원	공사기간	2023.09.09.~2025.05.31
현장주소	대저위치 울산시 북구 양정동 1-2번지 외 89번지		
공사내용	공장 4개동 및 부속건물 신축		
6. 안전점검 신청 개요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안전점검 내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참고		
안전점검 비용	72,800,000 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6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3년 09월 05 일

신고인 현대엔지니어링(주) (서명 또는 인)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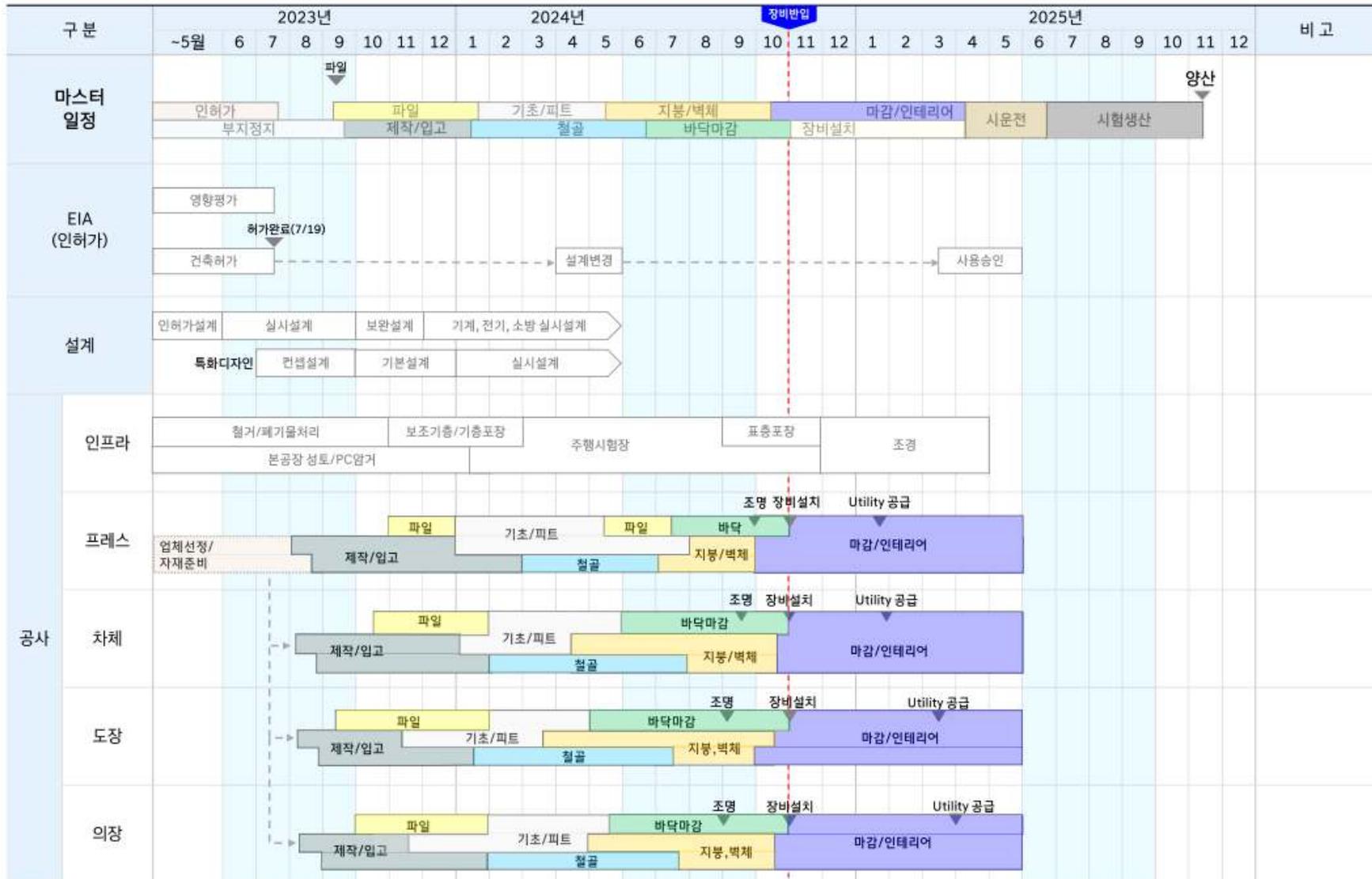
귀하

첨부서류	안전관리계획서 중 안전점검비 산출내역	수수료	없음
<b>처리절차</b>			
신청서	→	접수	→
신고인		검토	→
		수리	→
			통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210mm x 297mm [백상지(80g/㎡)]

# 본공장 마스터 스케줄

사내안  
RESTRICTED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 - 1234호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주전~어물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를 위한 열람공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107(2023.5.18.)로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 되어 고시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주전~어물동)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1조의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을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2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사업의 명칭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주전~어물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46-4번지
  - 나. 성 명 : 울산광역시청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가. 사업의 목적 :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도로 확·포장 공사
  - 나. 사업의 개요
    - 1) 위 치 :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동, 복구 어물동 일원

## 2) 사업규모

(단위 : m<sup>2</sup>)

구 분	사업면적 (m <sup>2</sup> )	토지이용계획(m <sup>2</sup> )	비 고
		도 로	
신 설	44,964	44,964	

3) 사업면적 : 44,964m<sup>2</sup>

4. 결정사유 : 진입도로 미 확장구간 공사시행
5. 사업시행기간 : 2023. 11. 01. ~ 2033. 12. 31.
6. 열람기간 : 공고게제 다음날부터 14일간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세목조서 : “붙임 참조”
7.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052-241-7913)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용지도 번호	구	동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동구	주정동	379	도	133,701	1,585	공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2	동구	주정동	379-6	도	337	152	공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3	동구	주정동	770-1	천	166	99	공	울산광역시 동구	동구 건설과
4	동구	주정동	551-3	임	2,112	579	박*자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1길 5 (연암동)	
5	동구	주정동	산1	임	17,554	69	김*씨 과출산공 회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202	
6	동구	주정동	551	전	707	306	박*선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로 115 (무거동)	
7	동구	주정동	산3-2	임	251	251	이*수	울산시 중구 동부리 32	
8	동구	주정동	산2	임	298	96	박*곤	울주군 강동면 어물리	
9	동구	주정동	552	답	70	70	박*울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99번길 19, 102동901호 (옥동, 옥동대농원한천휴플러스)	
10	동구	주정동	770-2	천	3,510	164	공	울산광역시 동구	동구 건설과
북구									
1	북구	어물동	1246-1 2	도	168.0	87.0	공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2	북구	어물동	287-3	도	72.0	58.0	공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3	북구	어물동	287-2	도	782.0	433.0	공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4	북구	어물동	1247-1	도	271.0	140.0	공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5	북구	어물동	289-1	도	11,974 .0	6,342. 0	공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6	북구	어물동	341-8	도	257.0	117.0	국	농림축산식품부	시농축산과 농수산과

용지도 번호	구	동	지 번	지목	지 적 ( m <sup>2</sup> )	편입면적 ( m <sup>2</sup>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7	북구	어물동	산377-5	임	1,180. 0	21.0	김*화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791 (어물동)	
8	북구	어물동	295	대	350.0	3.0	김*길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295	
9	북구	어물동	296	답	1,911. 0	625.0	한*근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278	
10	북구	어물동	산389	임	2,167. 0	450.0	한*근	울산 북구 어물동 278	
11	북구	어물동	산378	임	2,091. 0	44.0	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9-7	
12	북구	어물동	340	도	97,061. 0	27,083. 0	공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13	북구	어물동	산369-3	임	2,342. 0	23.0	김*식 외1인	부산 중구 중앙동 1가 22	
14	북구	어물동	1240-1 37	도	251.0	26.0	국	기획재정부	자산관리공사
15	북구	어물동	1240-1 48	천	110,64 0.0	74.0	국	국토교통부	북구 건설과
16	북구	어물동	1240-1 40	천	306.0	135.0	국	농림축산식품부	시 농축산과 북구 농수산과
17	북구	어물동	1240-5 4	천	45,810 0	370.0	국	기획재정부	북구 건설과 자산관리공사
18	북구	어물동	1240-9 4	천	1,970. 0	121.0	국	농림축산식품부	시 농축산과 북구 농수산과,
19	북구	어물동	1240-1 02	천	86.0	40.0	국	농림축산식품부	시 농축산과 북구 농수산과,
20	북구	어물동	1240-1 35	천	59.0	31.0	국	농림축산식품부	시 농축산과 북구 농수산과
21	북구	어물동	1240-1 39	천	626.0	330.0	국	농림축산식품부	시 농축산과 북구 농수산과,

용지도 번호	구	동	지 번	지목	지 적 ( m <sup>2</sup> )	편입면적 ( m <sup>2</sup>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22	북구	어룡동	857	도	15,130 .0	4,891. 0	공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23	북구	어룡동	1240-1 00	천	169.0	4.0	국	농림축산식품부	시 농축산과 북구 농수산과
24	북구	어룡동	1240-1 34	천	22.0	1.0	국	농림축산식품부	시 농축산과 북구 농수산과,
25	북구	어룡동	1363	도	19,745 .4	144.0	공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열람공고 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서

「사업명: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주전~어물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p>소유자 (관계인) 의견</p>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 1235호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323-11번지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4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나. 명칭 : 도시계획시설(중산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사업

###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323-11번지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결정현황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217	주차장	노외주차장	중산동 1323-11번지	1,000	'10. 10. 28. 울(북)고 83호

나. 토지조서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단 위	면 적	편입면적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323-11	주차장	m <sup>2</sup>	1,000	1,000	
계					1,000	

다. 건물조서

개 요	주차전용 건축물		합계(m <sup>2</sup> )
	주차장(m <sup>2</sup> )	부대시설(m <sup>2</sup> ) (세차장)	
면 적	352.80	149.40	502.20

## 라. 시설물조사

층 별	건 물 별 구분	건 축 면 적		비 고
		주차장(m <sup>2</sup> )	부대시설(m <sup>2</sup> ) (세차장)	
지상 1층		352.80	149.40	502.20
계		352.80	149.40	502.20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박만기, 정석대

나.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길 57, 207호

-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66, 102동 702호

5. 사업기간 : 인가일 ~ 2023. 12. 31.

6.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열람내용: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내용

8. 열람기간: 공보게재 다음날부터 20일간

9.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10.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052-241-7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1)

번호	지번 (중산동)	지목	대장 면적	편 입 면 적		소 유 자	
				부지	계	성 명	주 소
1	1323-11	주차장	1,000	1,000	1,000	박만기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찬상길 57, 207호
						정석대	울산광역시 남구 반영로 66, 102동 702호
계			1,000	1,000	1,000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 1239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신청개요

- 가. 신청자 : 강동해안해상풍력(주)  
 나. 목적 : 강동해안 해상풍력 부유식 라이다 설치사업  
 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 내역

신청자		장 소	면 적 (㎡)	목 적	설치하는 공 작 물	기 간	비 고
성 명	주 소						
강동해안 해상풍력 (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상남2길 31-17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항 기점 동측 약 15.8km 이격 공유수면	10,216	기상측정용 라이다 부이 설치 해역 주변의 풍황, 풍속, 풍향 등을 관측하여 해상풍력단지 개발의 타당성 평가	기상측정용 라이다 부이 설치	허가일로 부터 36개월	

### 2. 의견제출

- 가.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나. 제출기한 : 2023. 9. 15.(금) ~ 2023. 10. 4.(수)까지  
 다.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라.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우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농수산과(연암동), FAX : 052-241-8059)

### 3. 기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052-241-80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239호

신청자		장 소	면 적 (㎡)	목 적	설치하는 공 작 물	기 간	비 고
성 명	주 소						
강동해안 해상풍력 (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상남2길 31-17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항 기점 동측 약 15.8km 이격 공유수면	10,216	기상측정용 라이다 부이 설치 해역 주변의 풍향, 풍속, 풍향 등을 관측하여 해상풍력단지 개발의 타당성 평가	기상측정용 라이다 부이 설치	허가일로 부터 36개월	

○ 의견 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 . . .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 화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체적인 의견과 기타 증빙서류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음